

영등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

의안 번호	156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 : 2008. 7. 11.

발 의 자 : 최미경 의원 외 4인

1. 제안이유

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우리 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구민과 우리구 의회 의사를 구정 전반에 적극 반영 되도록 하기 위하여 영등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함.

2. 주요골자

- 출석기간 : 2008. 7. 22(화)
- 구성이유 : 구정질문 및 답변
- 장 소 :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
- 출석대상 : 구청장, 부구청장, 보건소장, 각 국장
- 요 구 자 : 최미경 의원 외 4명

3. 참고사항

- 지방자치법 제42조
-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
-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65조